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이 서 영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①

신청기관

보건복지부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이 서 영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Analysis of Post-Mortem Examination Laws in Korea and Overseas

연구자 : 이서영(한동대학교 CK교수)
Lee, Seo-Young

2015. 7. 15.

요약문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에 필요한 시체의 수급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 법은 최근 수 년 간에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연구 수요에 현실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시체 기증 방법과 유가족의 승인, 무연고 시체의 해부, 해부 대상 시체의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과 미국의 「개정통일사체제공법」 및 관련 주(州) 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II. 주요 내용

- 「시체해부법」은 시체 해부 자격, 시체 해부 명령, 유가족의 승낙, 변사체의 검증,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의 관리, 이상 발견 시의 조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시체의 인도,

시체의 화장, 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시체 표본 승낙, 시체에 대한 예의, 권한의 위임, 별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로는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체해부보존법(死体解剖保存法)」,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한 시체 기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헌체에 관한 법률(醫學及び齒學の教育のための獻体に關する法律, 이하 ‘헌체법’)」이 있음
- 「사체해부보존법」은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보존법」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으나,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음
- 「사체해부보존법」상 기본적으로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서는 해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학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그 외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보다 시체해부 자격이 포괄적이고 유동적임
- 「사체해부보존법」에서 시체의 해부에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그 시체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승낙 없이 해부가 가능함

- 「현체법」은 우리나라에 아직 유사한 법제가 없는 법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습용 해부체 확보를 위한 시체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식을 신장함에 기여하는 법이라 볼 수 있음
 - 「현체법」은 교육 목적의 시체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체 의사에 대한 존중 및 현체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체법」은 현체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자가 서면으로 현체 의사표시하였고 유가족이 해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현체에 대한 유가족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음
 - 「현체법」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은 현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현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
 - 일본의 현행 법제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인하여 시체를 해부실습용으로 기증한 망자의 존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과대학 등에서는 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해부참여자에게 철저히 교육 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학회가 연합하여 의·치과대학에 권고한 바가 있음
- 미국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해부는 주(州)관할 영역이지만,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에서 「2006년 개정통일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를 작성하였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여 법제화하였음

- 「개정통일사체법」은 기증의사 표시를 현실적이고 폭넓게 규정하여 유언장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에 표시된 문장(statement) 또는 표식(symbol)을 포함시키고, 사체 기증의 요식을 완화시킴
- 「개정통일사체법」에서는 기증 의지에 대한 기증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사후 유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임의로 기증자의 기증 의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도록 함
- 「개정통일사체법」는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립한 미성년자나 주 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미성년자, 경우에 따라서는 기증자의 대리인(agent), 부모, 후견인 등이 기증자의 생전에 기증자를 대신하여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무연고 시체에 관해서는 각 주의 법에 따르며, 대부분의 주에서 소기의 시간 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교육 및 연구기관에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무연고 시체의 실제 해부 여부는 주의 지리적, 사회 경제적 요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주에서 무연고 시체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무연고 시체의 분배는 의료교육기관의 장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많은 주에서 무연고 시체는 해부 뿐 아니라 방부처리를 위한 교육에도 활용되는데, 지속적으로 해부용 시체가 충분히 공급

되기 어려운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해부 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할 수 있음

-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연고 시체 해부의 실효성과 윤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I. 기대 효과

-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의 입법 동향과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제어 : 시체해부, 무연고 시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사체해부보존법, 헌체법, 통일사체기증법

Abstract

I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governs post-mortem examination, and it applies to dissection of cadaver for the education and research.
- However, in the past few year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it fails to reflect the reality of medical education or research demand for development of medicine and science. Parts that especially requires amendment include: who may conduct dissection, how anatomical gifts may be made and the effect of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dissection of unclaimed dead bodies, and respectful treatment of the cadavers.
-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and analyz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As such,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of Japan, and the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and relevant state laws of the US will be analyzed.

II . Contents

-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provides who may dissect or order dissection of corpses, consent of bereaved

families for dissection, verification of bodies of accident, measures upon discoveries of abnormalities, management of corpses, dissection for research, provision, etc. of corpses without claimants (unclaimed dead bodies), consent to human specimens, and courtesy to corpses, delegation of authority, and other penal provisions.

- In Japan, post-mortem examination is governed by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whose purposes and functions are similar to Korea's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nd by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has a structure similar to Korea's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Acts lies in who may conduct dissection of dead body.
- According to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post-mortem examination requires a local public health center's director permission. However, in exception, doctors, dentists and other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Labor who have much knowledge and technique in post-mortem examination may conduct dissection without such permission. This is broader and more flexible than Korea's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which strictly limits who may conduct dissection.

- 「Postmortem Examination and Corpse Preservation Act」 in principle requires the permission of the deceased's family members in order to dissect the deceased's body, but there are a few exceptions, as is the case in Korea. In addition, dead bodies unclaimed during 30 days after death may also be dissected without family members' consent.
-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is unique piece of legislation, and there is no Korean counterpart. It is rather declaratory and symbolic, but it contributes t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natomical gift for education and research purposes, as well as to raising awareness among citizens.
-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raises awareness about anatomical gift for educational purpose and supports intent to make anatomical gifts, as well as organizations of anatomical gift donors.
-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states that the intent to make anatomical gift shall be respected, and that, in case the deceased made written expression of intent to make anatomical gift and the family members do not refuse dissection, no separate consent for anatomical gift is required from family members.
- According to 「Act on Body Donation for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ay provide supervision and advice on the activities

of organizations of anatomical gift donors. The State has the duty to take measures to raise understanding of anatomical gift.

- While not yet reflected to current laws, wide distribution of cell-phones with camera functions and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services resulted in damaging the dignity and invasion of privacy of donors whose bodies are used in anatomy practicum, and these problems caused relevant associations to jointly recommend medical and dental schools to properly educate their students on respect for the donors.
- In the US, dissection for education and research purposes is in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However, the Uniform Law Commission drafted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and most of the states decided to adopt it and legislated into their state laws.
-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broadly defines “document of [anatomical] gift” to include a statement or symbol on a driver's license, ID card, or donor registry, and simplifies the formalities of anatomical gift donation.
-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respects the autonomy of the donor's intent to make anatomical gift, and prevents amendment or revocation of donation by a 3rd party after the donor's death.
-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expands the rule on who may make anatomical gift before donor's death, and it includes

emancipated minor, minor who are licensed to drive according to state regulation, and, in some cases, donor's agent, parents, and guardian.

- Unclaimed dead bodies are governed under each state's law, and in most states, after a designated number of days, unclaimed dead bodies may be distributed to medical schools through a regulated procedure. However, whether they are actually dissected for educational purpose depends on the geological, social, economical, cultural condition of each state.
- Most states have established a system in which representatives of medic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government participate in a committee which fairly and efficiently distributes unclaimed dead bodies among institutions eligible to dissect them.
- A lot of states use unclaimed dead bodies not only for education of anatomy but also embalming, which allows development of technique that produces cadaver models which may be used for an extended period when actual cadaver is hard to obtain.
- However, in the US, similarly to Korea, use of unclaimed dead bodies for dissection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for its lack of usefulness and ethical problems.

III. Expected Effec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cent legislative trend and discussions based on the laws of Japan and the US would provide le-

ssons as to how to amend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in the future.

➤ Key Words : Dissection, Post-mortem Examination, Unclaimed Dead Bodies,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 2 장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관련 실태와 법제	21
제 1 절 개요 및 시체 해부 현황	21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23
1. 의의와 목적	24
2. 시체 해부 자격	24
3. 유족의 승낙	28
4. 무연고 시체의 해부	30
5. 시체의 관리	34
6. 법률 위반의 효과	35
제 3 장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39
제 1 절 개요 및 시체 해부 관련 현황	39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40
1. 「사체해부보존법」의 분석	40
2.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의 분석	49

제 3 절 시사점	53
제 4 장 미국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57
제 1 절 개 요	57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현황 및 법제	60
1. 「개정통일사체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60
2. 무연고 시체 해부 관련 주별(州別) 법제	75
제 3 절 시사점	82
1. 「개정통일사체법」이 주는 시사점	82
2. 무연고 시체 처리 관련 법제가 주는 시사점	85
제 5 장 요약 및 결론	87
참 고 문 헌	9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체의 해부는 교육·연구, 장기 이식, 부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해부”란 생물체의 구조를 관찰하여 그 작용을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를 의미하며, 의학에서의 해부는 크게 정상해부(正常解剖, dissection)·병리해부(病理解剖, autopsy)·법의해부(法醫解剖, medico-legal autopsy)로 구분한다.¹⁾ 정상해부란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해부로,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등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가 이에 해당한다.²⁾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은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와 일부 사법 또는 행정 목적의 해부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제정 이후 53년 간 타법개정을 제외하고 1회의 전부 개정, 4회의 일부개정을 거쳤는데, 최근 수 년 간에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연구 수요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³⁾ 특히, 법의 목적에 있어 의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 해부실습교육의 중요성이나 이와 관련한 국민의 인식 수준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1) 한국과학창의재단(편),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2010), http://www.scienceall.com/%ed%95%b4%eb%b6%80anatomy-autopsy/?term_slug=study-2&sa_term=scidictionary (최종접속일 2015년 5월 1일).

2) *Id.*

3) 예를 들어 김원식,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대한 체질인류학회지 제24권 제1호(2011), 박창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0권 제4호(2013), 정봉실, “우리나라의 인체기증 활성화방안 : 장기, 각막, 인체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 석사학위논문(2009), 이주주, “시신기증 영향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2011) 등 참조.

있다.⁴⁾ 이에 지난 2, 3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체해부법」의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⁵⁾ 가장 최근에는 2015년 6월 정부 제안으로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었다.⁶⁾

위의 개정안과 학계의 의견에서 지적하는 바, 의·과학의 발전으로 시체해부 및 인체 유래물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학문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 시체 기증자가 늘어나고 무연고 시체를 실제 교육 실습에 사용하는 기관이 줄었다는 점, 시체 기증과 해부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기준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체해부법」을 개정함에 있어 가장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시체 기증 방법과 유가족의 승인, 무연고 시체의 해부, 해부 대상 시체의 관리 및 예우 등으로 좁힐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체해부법」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수요와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과 현행법의 개정 수요에 따라, 시체 해부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운영제도 현황 분석을 분석하고 위의 「시체해부법」 관련 쟁점들을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입법수요에 따라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死体解剖保存法)」과 주(州)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및 관련 주 법의 분석 및 비교로 한다.

4) 김원식, 위의 논문, 42면.

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2014년 8월 1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2013년 6월 7일).

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15년 6월 1일).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관련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된 조항을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본 뒤, 각 쟁점 별로 일본과 미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법제를 요약하고 비교한 뒤 결론을 맺는다.

이에,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관련 실태와 법제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인 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시체 해부와 기증 관련 법제를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해외 법제 분석 결과로써 「시체해부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결론을 맺는다.

이 연구에서는 “해부”의 의미를 주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로 한정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 연구는 문헌 중심으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연구 수행 중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관련 실태와 법제

제 1 절 개요 및 시체 해부 현황

우리나라에서 교육 목적의 인체 해부는 최초 서양식 의학교인 1886년 제중원의학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해부학교육의 첫 공식 기록은 1899년 3월 경성의학교 해부학 과목의 개설과 함께 시작되었다.⁷⁾

현재는 41개 의학 교육기관⁸⁾에서 기초의학 과목으로 해부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병리학, 법의학 등의 과목에서도 시체의 해부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부학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 하게는 학생 3~4명당 1구의 시체가 필요하나, 교육용 시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1990년대에는 2~30명당 1구 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평균적으로 학생 6명당 1구 정도의 시체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⁹⁾

2000년대 이전까지는 교육 목적을 위한 시체 해부에 주로 무연고 시체를 활용하여 왔다.¹⁰⁾ 서울의 경우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인근

7) 최수환 등, “해부용 시신의 인구학적 특성-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시신기증자 110명을 대상으로-”,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2권 제3호(2009), 195면. 황선종 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한 시신기증인들의 사회적 특성”,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5권 제2호(2012), 87면.

8) 2015년 6월 현재 국내의과대학 수는 41개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http://www.kimee.or.kr/new2009/main.html> (최종접속일 2015년 6월 15일).

9) MBC 뉴스데스크, “해부학 교육용 시신 부족” (1993. 10. 7), available at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60463_13445.html (최종접속일 2015년 6월 15일), 이왕재, “해부학이야기”, 비타민C 박사 이왕재 교수의 웹사이트, <http://www.doctorvitamin-c.co.kr/anatomy.shtml> (최종접속일 2015년 6월 15일).

10) 무연고 시체란 ① 연고자가 없는 시체 ②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③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시체를 말한다. ‘연고자’는 장사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따른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시체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체 인수를 하지

의과대학에 무연고 시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행정의 전산화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가 감소하였고, 무연고 시체로 판단되어 의과대학에 교부되었으나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에 교부하지 않고 가매장 또는 화장하게 사례가 늘게 되었다.¹¹⁾ 무연고 시체 감소의 원인은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국민의 생활여건, 보건환경 및 경제수준이 발전하였다는 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노숙인, 행려환자 등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여파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의과대학의 해부학실습 교육의 부실화로 이어졌다.¹²⁾

이에, 의학교육계에서는 시신기증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의대 학장이었던 故이광호 교수, 유명 연예인 등이 시신을 기증한 사실이 미디어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국민의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신기증운동 초기에는 유교적인 풍습과 망자의 시신 훼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시신기증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비정부기관 및 종교단체의 활발한 시신·장기기증 운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 동안 기증을 거절할 정도로 시체 기증의 수요 대비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¹³⁾ 이와 같은 무연고 시체에 대한 실질적 수요의 감소와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 침해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무연고시체의 교육 및 연구 목적 해부와 관련된 규정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⁴⁾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연고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로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 (2012. 8) 참조.

11) 이왕재, 위의 웹사이트.

12) MBC 뉴스데스크, 위의 기사 (최종접속일 2015년 6월 15일).

13) 한겨레신문, “시신기증 신청 그만 받겠습니다”(2006. 9. 11), available at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156098.html> (최종접속일 2015년 6월 15일).

14)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시체 해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해부와 관련한 근대 규정은 1910년 경성부사의 ‘행려환자이송에 관한 사항’에서 서울 관내 발생 행려환자의 사망 시 이를 의학생해부실습용으로 교부하였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¹⁵⁾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에 이르러서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은 「시체해부법」이 유일하다.¹⁶⁾

「시체해부법」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의과대학장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교부 요청이 있을 시 사망을 확인한 후 시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제11조), 1995년 전문개정을 통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에 응하도록 하여(제12조) 의학의 연구 및 기초 의학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¹⁷⁾ 이는, 이미 연고자가 없는 행려병자가 사망한 경우나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시체를 의학 교육을 위한 해부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에 법적 절차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시체해부법」은 목적 조항 외 시체 해부 자격, 시체 해부 명령, 변사체의 검증,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의 관리, 이상 발견 시의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를 파악한 결과 교부된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일보,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2015년 1월 19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19/20150119002036.html>

15) 최수환 등, 위의 논문, 195면(대한해부학회, “Anniversary 50th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97, 72-73면 재인용).

16) 다만, 정상해부가 아닌 병리해부, 법의해부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0조, 「형사소송법」 제140조 및 173조, 「검역법」 제15조 등에서 해부명령이 가능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시체해부법」은 「형사소송법」, 「검역법」, 「의료법」을 원용한다.

17) 「시체해부법」(법률 제4915호, 1995.1.5., 전부개정) 제·개정 이유 참조.

조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시체의 인도, 시체의 화장, 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시체 표본 승낙, 시체에 대한 예의,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의의와 목적

『시체해부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시체의 범위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가 포함된다.

2. 시체 해부 자격

『시체해부법』 제2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체는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 학생이 해부할 수 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방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국민 보건을 위하여 명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상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등에만 시체 해부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범위의 사람이 시체 해부의 자격을 가진다.

- ①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시체해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이때 의과대학이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한, 제4조 제3항 나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한 환자가 사망하여 사인의 조사를 위해 해부가 필요하나 유족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부가 가능하다.

② 의과대학 교수의 지도하의 의과대학생

「시체해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지도하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이때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란 제1조에서 의학이 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하며 제2조 제1항의 의과대학이 치과대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치과대학생과 한의학생을 포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시체해부법」 제6조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부를 명할 수 있다(제2조, 제6조). 여기서 시체해부 명령을 받아 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¹⁸⁾

④ 법 원

「시체해부법」 제2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의거하여 검증을 함에 있어서 시체의 해부를 할 수 있다. 이때 검증의 주체는 「형사소송법」 제138조에 따라 법원이다.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라 검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하는 경우 (1) 감염병 전문의, (2) 해부학, (3) 병리학 또는 (4)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해부 담당 의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인은 사법경찰관에게 해부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⑤ 감정인

「시체해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시체의 해부를 할 수 있다.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69조에 의하여 법원이 임명한 학식 있는 사람이다. 감정은 「시체해부법」 제7조 2항에 의하여 「시체해부법」 제7조 1항에 따른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에 배제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69조에 따르면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검역소장

「시체해부법」 제2조 4항에 따라 검역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

「시체해부법」 제2조 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의해 시체 해부를 명할 시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⑧ 검사

「시체해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변사체 혹은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에 따라 검시를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

「시체해부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0조에 따른 검증으로 인한 시체 해부 시 검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또 「시체해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의거하여 검사가 시체를 검시할 시 제222도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⑩ 해부경험이 있는 사람

「시체해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사인 조사를 위해 해부가 필요하나 유족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가’항에 따라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현행의 해부 자격 범위는 국민의 인식 수준에 비하여 협소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해부 자격을 확대할 경우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자격 확대 방안 및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지정절차 뿐만 아니라 지정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게 하여 자격기준을 재검토하는 방안¹⁹⁾
- ②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해부학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²⁰⁾
- ③ 추후 법의인류학이 활발히 연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체 내지 유골을 연구하는 법의인류학자를 포함하는 방안²¹⁾

19) 문정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1296) 제1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4. 11., 5면.

2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4. 11., 5면.

21) 박창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제30집 제4호

④ 시체 해부는 임상의사가 행하기 어려우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²²⁾

3. 유족의 승낙

(1) 해부를 위한 유족의 승낙²³⁾

「민법」상 통설은 시체기증에 대한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의 주재자 등에게 시체가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유언에 따르지 않고, 기증하는 것이 용인될 뿐이다. 하지만 특별법인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즉시 시체의 해부의 해부가 가능하게 된다.

① 본인의 승낙이 있는 시체

「시체해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을 통해 자신의 시신을 해부에 기증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동의가 없어도 해부가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도 유족의 강력한 항의와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는 것이 관행이다.²⁴⁾

② 유족의 승낙이 있는 시체

본인의 유언이 없더라도 「시체해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승낙이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있는 경우 그 시체의 해부가 가능하다. 또 시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서면 승낙이 제4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하다.

(2013), 15면.

22)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2014. 11., 제5면. 다만, 시체해부 가능한 자의 범위 확대 시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하위 법령 제정 시,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23) “승낙”을 “동의”로 변경하는 정부 제안 개정안이 2015년 6월 1일자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24) 박창석, 위의 논문, 13면.

(2) 시체기증을 위한 방법(유언)과 관행

시체 기증에 대한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민법」에 따른 형식을 갖춘 유언이 요구된다.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적법한 시체의 기증이 가능하다(민법 제1066-1070조).

그러나 2013년 실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28개 의과대학이 45 가지의 방법으로 기증의사를 전달받고 있는 바,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대학 소정양식의 유언’이 전체의 92.9%, ‘타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대학소정양식의 유언’이 39.3%, ‘본인이 제출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17.9%, ‘타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자필증서 유언’이 2 개교, ‘녹음된 유언’이 1개교가 있었으며, 이에 비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사후시신기증의사를 전달받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²⁵⁾

위와 같은 방식은 편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홍보나 계몽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시신기증을 받도록 유도하거나,²⁶⁾ 새로운 시신기증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²⁷⁾ 예를 들어, 실제 의과대학에서는 「민법」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 양식에 의하여 기증을 받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서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5) 박창석, 위의 논문, 13면.

26) 박창석, 위의 논문, 15면.

27) 문정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1296), 2면.

4.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시체해부법」은 인수자가 없어서 의과대학 장에 요청에 따라 해부할 수 있는 시체(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조건에 따라 허가하고 있다. 「시체해부법」 제4조 제2항의 인수자가 없는 시체, 즉 ‘무연고 시체’의 확정을 위하여 본조 제3항이 적용되며, 「시체해부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체 해부를 위하여 대통령령인 「시체해부법」의 시행령이 적용된다.

(1)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해부 요건

- ①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인수자가 없는 시체

「시체해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이다. 60일이란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0일이며 그 전에는 해부를 할 수 없다(법 제12조 제3항). 이때 인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행령의 방법 · 절차를 따른다.

- 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아닌 시체

「시체해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이다.

- ③ 14세 이상의 시체

「시체해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이다. 14세의 여부를 판단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의한 신장 · 체중 · 흉위 · 2차성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시행령 제5조 제4항).

(2) 무연고 시체의 확정 및 의과대학에 교부를 위한 절차

1) 인수자 확인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분증 · 유류물품 등에 의하여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 · 조사하여

인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2) 시체의 보관 등의 조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 · 동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자의 옷 · 소지품 등 유류물품의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12조 1항, 시행령 제6조의2).

3) 의과대학 장에게 통고 및 교부요청

- ① 인수자 없는 시체의 발생 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의과대학 장에게 지체없이 통고(법 제12조 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 ② 의과대학 장은 5일이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체고부요청서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부요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5조 제2항).

4) 시체교부의 공고 및 제공

① 공 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통고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② 공고의 내용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의과대학의 장으로부터 시체의 교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먼저 일간신문에 공고를 낼 때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1. 사망자의 얼굴사진, 사망자의 신체적 특징, 사망당시의 착용복장, 사망자의 발견경위 및 사망원인과 함께 시체의 인수(연고)자를 찾는다는 내용

2. 시체의 인수자가 없어 시체를 교부·보존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
3. 유족 기타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시체의 인도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시체를 인도하겠다는 내용
4. 공고일시·공고자 및 연락처(시행령 제5조 제3항)

공고한 후에는 지체없이 그 시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부가 금지된 만14세 미만 여부의 판단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4세미만의 인정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발행한 한국소아발육표준치에 의한 신장·체중·흉위·2차성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시행령 제5조 제4항).

5) 시체의 교부 및 시체 제공 증명서의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체를 제공한 후 의과대학 장에게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시체 제공 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장이나 화장을 위한 신고로 보아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갈음한다(법 제12조 제5항).

6) 시체의 인수 및 사진촬영

시체를 교부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확인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 시체의 정면, 좌·우 사진, 2. 시체 전신의 전·후면 사진, 3. 기타 신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각 1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각 1매는 3년간 자체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출 받은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도 당해 사진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항).

(3) 표본으로 보존하기 위한 절차

「시체해부법」 제16조에 따라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장은 시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수 있다.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을 위하여 유족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승낙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6조 1항, 2항).

(4) 후에 유족이나 상당한 관계 있는 사람이 시체의 양도를 요구할 경우

「시체해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1항),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법 제13조 제2항).

(5) 시체의 장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 그 시체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하며(법 제14조 제1항)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법 제14조 제2항) 운반비, 화장비 및 그 밖에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법 제15조).

5. 시체의 관리

시체의 관리에 대하여는 「시체해부법」 제9, 10, 12조 및 관련 시행령이 적용된다.

(1) 시체의 구분

「시체해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제공 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의 달성 후 화장해야 하는데 「시체해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도불가

「시체해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이나 사자의 동의 없이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3) 이익취득의 금지

제10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4) 금지된 행위의 알선금지

양도불가 및 이익취득의 양도는 「시체해부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된다.

(5) 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 1항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또 본조 제2항에 따라 해부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도 시체의 인도나 화장시까지 주의해서 보존·관리해야 한다.

(6)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해부법」 제9조에 따라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6. 법률 위반의 효과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시체해부법」 제19조)

1) 해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부

제2조를 위반하여 해부한 자, 즉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의과대학 교수의 지도하의 의과대학생,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해부를 명한 사람, 법원의 검증 및 해부보조의 사법경찰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감정인,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검사를

위한 검역소장, 그 외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닌 자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1호에 해당된다.

2)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시체를 해부한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2호에 해당된다.

3) 검시를 하지 않은 검사체를 해부한 경우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3호에 해당된다.

4)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시체해부법」 제10조)

- ① 양도불가 의무를 위반한 자(제10조 제2항)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4호에 해당된다.
- ② 이익취득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제10조 제3항)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5호에 해당된다.
- ③ 금지행위를 알선한 자(양도, 이익취득: 제10조 제4항)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6호에 해당된다.

5) 무연고 시체의 인도를 거부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이 자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7호에 해당된다.

6) 시체 표본 보존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는 「시체해부법」 제19조 제8호에 해당된다.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시체해부법」 제20조)

1) 시체 해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6조의 시체해부명령을 거부한 자로 「시체해부법」 제2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이상 발견 시의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시체해부 중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인정되는 이상을 보고하지 않은 자로 「시체해부법」 제20조 제2호에 해당한다.

3) 시체의 화장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체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무연고 시체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거나 안치시 다른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로 「시체해부법」 제20조 제3호에 해당한다.

(3)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체해부법」 제21조, 시행령 제8조)

1) 과태료의 대상자

① 연구를 위한 해부의 장소 외에서 해부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9조의 인체구조연구를 위한 해부를 의과대학에서 명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시체해부법」 제21조 1항 1호에 해당한다.

② 시체의 구분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체관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자는 「시체해부법」 제2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

③ 시체에 대한 예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체해부법」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시체해부법」 제20조 제3호에 해당한다.

2)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시체해부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가 적용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통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사실 · 과태료금액 · 이의방법 ·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1항).

② 의견진술의 기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일 내 답변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8조 제2항).

③ 과태료 금액의 참작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3항).

제 3 장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제 1 절 개요 및 시체 해부 관련 현황

일본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의 수급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앞서서, 그러나 상당히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1950년대는 “의학교육의 위기”라 불리던 시대로, 해부실습에 필요한 시체가 크게 부족하였으며, 당시 기준으로 의학 대학에서는 학생 2인당 1구, 치과 대학에서는 학생 4인당 1구의 시체가 필요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학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²⁸⁾

그러나 현재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기증 운동인 헌체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대학들의 수요가 채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3년 기준 일본 전국 61개의 시체기증단체에 26만여 명의 헌체등록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11만여 명은 이미 시체를 기증하였다.²⁹⁾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 대학에서는 기증받은 시체만으로도 수요가 충족되고, 기증등록자 수가 많은 대학은 기증자등록을 중단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볼 때 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등록자수가 적은 대학도 있어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³⁰⁾

아울러, 최근에는 교육현장에서 시체에 대한 예우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의 보급과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학생이 해부 실습 중에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 없는 사진을 찍어 시체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게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시체기증자와 시체해부교

28) 公益財団法人 日本篤志献血協会, “献血とは”, <http://www.kentai.or.jp/what/01whatskentai.html> (last visited 2015. 6. 15).

29) *Id.*

30) *Id.*

육의 숭고한 뜻에 반할 뿐 아니라 사생활침해의 여지가 있으며, 시체 기증 의지의 감퇴로 이어질 수 있어 의학교육계의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법제

일본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로는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유사한 목적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체해부보존법(死体解剖保存法)」,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한 시체 기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医学及び歯学の教育のための献体に関する法律, 이하 ‘현체법’)」이 있다.

「사체해부보존법」은 정상해부, 병리해부, 행정해부, 사법해부에 적용이 되는 법인 반면, 「현체법」은 교육 목적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정상해부에 대하여만 적용이 된다. 다만, 사망의 시기와 관련하여, 이 두 법은 모두 심정지 후의 시체의 해부에 적용이 된다. 즉, 이식 목적으로 심정지 전 뇌사자의 인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사체해부보존법」과 「현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³¹⁾

1. 「사체해부보존법」의 분석

(1) 개 요

「사체해부보존법」은 병리해부, 행정해부, 사법해부에 적용이 되는 법으로, 1949년에 제정되어 총 11회의 개정을 거쳤다.³²⁾ 현행법은 총 23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시체해부법」의 제정 당시의 체계와 유사하다.

31) 内閣衆質 140第 32号(1997年 9月 30日) p.12.

32) 그 중 2014년 5월 30일에 개정된 부분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목 적

『사체해부보존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하는 시체의 해부 및 보존과 사인조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의학(치과의학 포함)의 교육 또는 연구에 이바지함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체해부보존법』

제 1 조

이 법률은 사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과 사인조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의학(치과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또는 연구에 이바지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률은 교육과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 뿐 아니라 사인의 조사 를 위한 법의 해부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 이식 및 기증 목적을 위한 뇌사자의 장기 적출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³³⁾

2) 시체 해부 자격

『사체해부보존법』은 제2조에서 시체 해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체를 해부하기 위해서는 해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제1항), 보건소장은 공중위생

33) 각주 23 참조. 심정지한 사체 또는 그 일부를 해부하는 것은 뇌사한 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living donation)과 구분되며, 이는 뇌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법리가 심정지에까지 이를 사망자 및 유족에게 적용되는 법률 및 법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의 향상 또는 의학의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를 할 수 있다(제2항).

『사체해부보존법』

제 2 조

1. 사체해부를 하려는 자는 먼저 해부하고자 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사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학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그 외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자가 해부하는 경우
 - ② 의학에 관한 대학(대학의 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교수 또는 조교수가 해부하는 경우
 - ③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④ 형사소송법(쇼와 23년 법률 제131호) 제129조(동법 제222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8조 제1항 또는 2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⑤ 식품위생법 ----의 규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⑥ 검역법 제----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 ⑦ 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규명 또는 신원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동법 제12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2. 보건소장은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령으로 정한다.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7개항에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학식과 기능을 갖춘 의사, 치과의사, 그 외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자가 해부하는 경우이다. ‘후생노동대신이 적

당하다고 지정'하는 방식은 사체해부자격인정요강 통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현재는 가장 최근에 통지된 2003년 요강의 기준에 따른다.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의사와 비(非)의사로 구분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①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실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2년 이상 해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최근 5년 내에 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와 15구 이상에 대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중 연 10구 이상 부검 사례가 있는 의료, 연구, 감찰의무기관 등에서 연구 또는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에 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와 15구 이상에 대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조교수 직에서 해부 관련 연구 및 교육업종으로 이직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해부와 관련한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연구자 또는 교육자 중에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직업의 특성 상 빈번히 해부를 하게 되므로 건건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교수 또는 조교수보다 하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의 경우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사체해부자격인정요강

최종개정: 2003년 12월 16일

제1 인정의 기준

1. 사체해부보존법은 다음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대학(대학의 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실에서 의사 또는 치과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해부보조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해부에 관련된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최근 5년 내에 적절한 지도자 아래서 총 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15구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주가 되어 해부를 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 취득 후 연간 10구 이상의 부검 사례가 있는 병원, 연구실, 감찰의무기관 등에 대하여 처음으로 부검보조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해부에 관련한 연구,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적절한 지도자의 아래서 5구 이상의 해부부조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15구 이상에 대하여 본인이 주가 되어 해부를 한 경험이 있는 자
- 다.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은 후 이직한 자로, 이직 후에도 계속 해서 해부에 관련한 연구, 교육업무에 종사한 자
- 라. 가~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해부에 관하여 가 또는 나의 자와 동등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의사 및 치과의사 이외의 사람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전임강사 직에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처음으로 해부보조업무에 종사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해부에 관련한 연구,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적절한 지도자의 아래에서 2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25구 이상에 대하여 스스로 주가 되어 해부를 한 경험이 있는 자
- 나. 의학 또는 치학에 관련된 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은 후 이직한 자로, 이직 후에도 계속해서 해부에 관련한 연구,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
-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해부에 관하여 가에 제시된 자와 동등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해부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

2. 1(2)의 가에서 규정하는 전임강사의 직에 있는 자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실에 상근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최근 5년간 의학 또는 치학(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에 한한다)에 관하여 상응하는 업적을 발표한 실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3)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된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한 자
3. 현재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있으므로, 인정은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후생노동대신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 시체 해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제2조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시체 해부 자격은 5년이 경과하면 의도심의회를 거친 후 취소될 수 있다.

『사체해부보존법』

제 3 조

-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또는 의업 또는 치과의업의 정지가 내려진 경우
 - ② 이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후생노동청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③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경우
 - ④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제 4 조

후생노동대신이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후생노동대신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한 경우 지정증명서를 교부한다.
3.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다.

3) 유족의 승낙

시체의 해부에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무연고 시체의 경우,³⁴⁾ 병리적 이유로 해부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전염병, 중독, 화재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어 사인 규명을 위해 도도부현지사가 감찰의를 통하여 해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해부하는 경우, 경찰 등에 의한 법의해부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검역법에 의하여 해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족의 승낙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체해부보존법』

제 7 조

사체를 해부하려는 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그 사체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

34) 『사체해부보존법』에서는 “무연고 시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그 시체의 인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상 무연고 시체와 유사한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체에 대하여 “무연고 시체”로 통칭한다.

2. 두 명 이상의 의사(그 중 한 명은 치과의사이어도 된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주치의를 포함하여 진료에 종사하던 두 명 이상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사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유족이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3조 제2항 하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무연고 시체의 해부

무연고 시체는 우선 시정총장이 관할하게 되며, 의과대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그 시체를 의과대학에 교부할 수 있다.

『사체해부보존법』

제12조

인수자가 없는 사체는 소재지 시정총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 제1항의 지정도시의 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학에 관한 대학의 장(이하 학교장)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교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체 확인 후 교부 할 수 있다.

제13조

1. 시정총장은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장에게 사체제공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제공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학교장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에 대하여는 봉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체제공증명서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으로 본다.

제14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체를 제공받은 학교장은 사망 확인 후 30일 이내에 인수자로부터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뒤에라도 사자의 상속인 및 그 외 사자와의 상당한 관계가 있는 인수인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체가 특히 얻기 어려운 경우로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보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6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사체일지라도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자 취급법에서 규정하는 시정촌은 지체없이 동법 소정의 수속(제7조의 규정에 따른 매화장을 제외한다.)을 하여야 한다.

5) 시체의 관리

시체의 해부는 해부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는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시체의 해부와 보존에 있어 예의를 잊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체해부보존법』

제9조

사체의 해부는 특별히 설치된 해부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부를 하려는 지역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2조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해부는 의학에 관한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0조

사체의 해부를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자는 사체의 취급에 있어 특히 예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해부실 외의 장소에서 해부를 한 경우에는 2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23조).

2.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의 분석

(1) 개 요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을 위한 현체에 관한 법률(医学及び歯学の教育のための献体に関する法律, 이하 ‘현체법’)」은 1983년에 제정된 법으로, 1회의 개정을 거쳤다.

이 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을 지닌 법으로, 교육 목적의 시체 기증(현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체 의사에 대한 존중 및 현체 관련 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후생노동성 소관인 「사체해부법」과는 달리 문부과학성의 소관이며, 1983년에 제정되었다.

「현체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각 대학마다 ‘시로기쿠카이(白菊会, 백국회)’를 결성하여 현체자를 모집하고 관리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 해외의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해부학 교수 등이 귀국 후 일본의 해부실습용 시체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깨닫고 현체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³⁵⁾ 이에 해부학 전공 교수들

35) 星野一正, “献体の法制化を顧みて”, 時の法令1486号, 55-61, 1994年11月30日発行 民主化の法理医療の場合, <http://cellbank.nibio.go.jp/legacy/information/ethics/refhoshino/hoshino0017.htm> (last visited June 19, 2015).

을 중심으로 전국의 해부실습용 해부체의 확보방책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문부과학성에 “현체등록에 관한 법제화의 촉진에 관하여”라는 권고문을 제출하였다.³⁶⁾ 권고문의 취지는 실습용 해부체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필요시 「사체해부법」을 일부개정할 것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다.³⁷⁾ 이 권고문의 취지는 국회에서 받아들여졌으며, 1983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결실을 맺었다.

(2) 주요 내용

「현체법」은 총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이고, 제3조는 현체의사의 존중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다. 제4조는 ‘현체에 관한 사체의 해부’에 관한 규정으로, 현체 의사를 표한 망자의 시체 해부 시 유족의 승낙 필요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제5조는 현체 의사를 표한 망자의 사체 인수, 제6조는 사체 수령 이후의 기록, 제7조는 현체 단체에 대한 문부과학대신의 지도 및 조언, 제8조는 현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1) 목적과 정의

「현체법」의 목적은 현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학 및 치학 교육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현체 의사란 “자기의 신체를 사후에 의학 또는 치학의 교육을 위해 행해지는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해부의 해부체로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체해부보존법」과는 달리, 「현체법」의 적용 범위는 정상해부로 한정된다.

36) *Id.*

37) 伏見康治, “*献体登録に関する法制化の促進について(勧告)*” (総学第1660号 昭和54年11月24日), available at <http://www.scj.go.jp/ja/info/kohyo/09/11-16-k.pdf>.

『현체법』

제 1 조 목적

이 법률은 현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치학의 교육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현체 의사(意思)”란 자기의 신체를 사후에 의학 또는 치학의 교육을 위해 행해지는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해부(이하 “정상해부”라 한다)의 해부체로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체 의사 존중과 유족의 승낙

『현체법』 제3조는 선언적으로 현체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4조에서는 사망한 자가 서면으로 현체 의사를 표시하였고 유가족이 해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현체에 대한 유가족의 승낙을 별도로 요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유가족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체법』

제 3 조 현체 의사의 존중

현체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 4 조 현체에 관련한 사체의 해부

사망한 자가 현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고, 또한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체의 정상해부를 하려는 자는 사체해부보존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1. 당해 정상해부를 하려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의학 또는 치학에 관한 대학(대학의 학부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사망한 자가 헌체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한 것을 유족에게 통지하고 유족이 그 해부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2. 사망한 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제 5 조 인수자에 의한 사체의 인도

사망한 자가 헌체 의지를 서면으로 표시하였고, 또한 당해 사망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사체의 인수자는 학교장으로부터 의학 또는 치학의 교육을 위하여 인도 요구가 있을 시 당해 사체를 인도할 수 있다.

3) 정부와 국가의 역할 및 책무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문부과학대신은 헌체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인 헌체자 단체로는 각 의학 및 치학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시로기쿠카이’와 공익재단법인 일본독지헌체협회(公益財團法人 日本篤志獻体協會) 등이 있다.

아울러 국가는 헌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법 제7조). 「헌체법」이 제정된 1980년대에는 아직 헌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지 않았고, 헌체의 법제화는 유체에 대한 일본인의 “특수감정을 고려할 때 유체의 취급방법 및 정상해부 등의 방법이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³⁸⁾는 생각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헌체법」

제 6 조 지도 및 조언

문부과학대신은 헌체 의사가 있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에 그 요구에 응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38) *Id.*

제 7 조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국가는 헌체의 의의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절 시사점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은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보존법」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으나,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있어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보존법」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정상해부를 할 수 있는 자를 기본적으로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은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수 및 조교수 외에도 후생노동대신이 자격을 인정하는 자가 해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생노동청에서 필요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직업상 빈번히 해부를 하게 되므로 건건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편의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교수 또는 조교수보다 하위의 직급에 있는 사람의 경우, 또는 굳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어도 해부학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교육자가 포함된다.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외에도 시체 또는 인체조직의 해부가 불가피한 신생학문 및 기존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가는 의료 관련 직역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도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시체의 해부는 기술적인 요소 뿐 아니라 윤리적 요소와 국민의 수용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의 설정과 조정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현체법」은 우리나라에 아직 유사한 법제가 없는 법으로,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습용 해부체 확보를 위한 시체기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식을 신장함에 기여하는 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현체 관련 단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법령을 소관하는 정부기관과 국가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일본의 ‘시로기쿠카이’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도 각 대학 내 시체기증에 대한 조직의 구성이 잘 되어있지 않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의대 교수 및 의사를 비롯한 지식층의 시체기증운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체기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현체법」과 유사한 법의 제정이나 「시체해부보존법」의 일부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마지막으로, 아직 일본의 현행 법제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의 보급과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인하여 시체를 해부실습용으로 기증한 망자의 존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과대학 등에서는 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해부참여자 또는 실습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인체 뿐 아니라 동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생명체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에서는 인체 및 인체표본제공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힘쓸 것을 해부학회, 병리학회, 법의학회가 공동으로 제언한 바가 있다.⁴⁰⁾ 동 제언문에는 아울러 교육기관은 시체 및 인체 표본제공자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정

39) 김원식,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4권 제1호(2011), 42면, 48면.

40) 河田 光博, et al., “人体および人体標本を用いた医学・歯学の教育と研究における倫理的問題に関する提言” (2013. 8. 1), available at http://www.jslm.jp/topics/teigen_201308.pdf (last visited 2015. 6. 15).

보는 교육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조치는 「사체해부보존법」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및 인체표본의 활용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잃게 되고, 의치학의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⁴²⁾

위와 유사한 문제점이 IT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시체해부법」은 제17조에서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포괄적인 면이 있으며, 일본의 정책동향을 참고로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 기관이 해부실습현장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자의 행동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

41) *Id.*

42) *Id.*

제 4 장 미국의 시체 해부 관련 법제

제 1 절 개 요

영미권에서 해부학 연구를 위한 시체의 조달에 있어서는 1832년 영국의 「해부학법(Anatomy Act)」이 최초로 합법적인 무연고 시체 사용을 허가하였다.⁴³⁾ 그 전에도 무연고 시체가 해부실습에 공공연히 사용되었으나, 해부실습용 시체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자 정상적으로 매장된 시체의 암거래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무연고 시체의 활용을 법제화함으로써 합법적인 시체 수급을 활성화 하였다.

한편, 근대에 들어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해부실습용 시체 부족을 극복하고, 기증을 통해 시체를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연방 차원에서 시체기증에 대한 절차와 관리를 통일화하기 위하여 1968년 「2006년 개정통일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을 작성하였고, 2009년에 최신개정을 거쳤다.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 연방 정부에서 관할하는 영역과는 별도로 각 주(州)가 관할하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 그러나 50여 개 이상의 주가 개별적으로 입법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통일법(Uniform Act)」이라는 형태로 입법 모델을 제시한 후 각 주의 상황에 따라 통일법을 주법으로 입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통일법의 작성은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 ULC)」⁴⁴⁾에서 맡고 있다. ULC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50개 주와 D.C.,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법

43) 고대 그리스에서는 의학자들이 교육 및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정식으로 시체의 해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로마제국시대에는 해부가 금지되었다. 이후 시대에 따라 해부가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영미권에서는 「해부학법(Anatomy Act)」이 무연고 시체의 해부를 허가하는 최초의 근대 법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44)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률가, 판사, 입법가, 법학교수 등이 연방에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법을 조사하고 통일법을 작성하여 주 정부가 입법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⁴⁵⁾

통일법의 목적 중 하나는 연방 정부 및 사회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한 법을 각 주에 입법화하는 것에 있다.⁴⁶⁾ 미국에서 기증,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시체의 제공은 주법에 따르고 있으나, ULC는 연방 정부의 정책, 과학기술의 발달, 사전의료지시서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법적 환경에 각 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체제공에 관한 통일법인 「2006년 개정통일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이하 ‘개정통일사체법’).」을 작성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식 가능한 장기 부족 현상은 지속되어 왔다. 연방 정부는 1984년에 제정된 「연방장기이식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 NOTA)」의 개정을 거듭하며 장기 이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개정통일사체법」이 작성되기 2년 전인 2004년에는 「장기의 이식 및 회복 향상법(Organ Donation and Recovery Improvement Act)」를 통하여 살아있는 장기기증자의 여행경비 및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였다.⁴⁷⁾ 「개정통일사체법」은 연방 정부의 장기 이식 활성화 정책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존의 「통일사체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UAGA)」을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통일사체법」은 1990년대 이후 발전한 의료와 장기 기증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방 정부의 장기 기증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통

45) *Id.* ULC의 역사,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Uniform Law Commission, About the ULC, available at <http://uniformlaws.org/Narrative.aspx?title=About%20the%20ULC> (last accessed on June 10, 2015) 참조.

46) *Id.*

47) 장기 이식에 관한 주요 연방법제의 제개정 연혁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onate the Gift of Life, available at <http://organdonor.gov/legislation/legislationhistory.html> (last accessed on June 10, 2015).

『일사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ULC는 장기구득기관협회(Association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 AOPO)와 함께 기존 「통일사체법」에서 개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⁴⁸⁾

첫째, 시체의 기증에 관한 법률의 통일성 결여이다. 비록 모든 주들이 1968년에 작성된 「통일사체법」을 도입하였으나, 이후 1987년에 개정된 「통일사체법」은 몇몇 주만이 도입하였으며, 그나마도 부분적으로만 도입한 주도 있었고, 독자적으로 입법을 한 주도 있었다. 이러한 통일성의 결여는 법선택(Choice of Law) 문제로 이어졌다.⁴⁹⁾

둘째, 1980년 후반에 이후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장기구득기관이 시체 기증과 관련된 행정을 주관하여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대기자 리스트는 ‘장기 구득과 이식 네트워크(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를 통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일사체법」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연방법과 충돌하는 조항들이 존재하였다.⁵⁰⁾

셋째, 운전면허증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기증의사 표시가 늘어가는 추세임에도 기증자 등록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⁵¹⁾

넷째, 기존 「통일사체법」 하에서는 헬스케어에 있어 법적 대리권(health-care power of attorney)을 가진 건강관리인이나 대리인에 의한 사후 장기 기증이 허용되지 않았다.⁵²⁾

48) Sheldon Kurtz, *The 2006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 A Law to Save Lives*, Health Law Analysis (February 2007), at 44-45. Kurtz는 2006년의 「개정통일사체법」 작성에 참가한 위원이었다.

49) *Id.* at 44-45.

50) Kurtz, at 45. 예를 들어, 연방법에 의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은 장기구득기관과 연계하여야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장기 이식 요청을 위한 유가족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기증자 유가족 접촉이나 기증 요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었다.

51) *Id.* at 45.

52) *Id.*

다섯째, 1987년에 개정된 「통일사체법」은 기증 문서를 타인이 취소할 수 없으며 기증의 유효성을 위하여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였으나, 일부 병원이나 장기구득기관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으며, 보다 조문에서 명확하게 입법 의도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⁵³⁾ 무엇보다, 유가족의 대부분이 기증을 원하는 경우에도 종종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망자의 의지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⁵⁴⁾

이러한 입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개정통일사체법」은 종래의 「통일사체법」에서 채용한 사전동의(opt-in)주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대리인이 확정적으로 기증 의사를 표할 때에만 시체의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⁵⁵⁾ 기증 과정에서 개인자율성(personal autonomy)을 보다 존중하도록 하였다.⁵⁶⁾ 또한, 유가족, 친구, 간병인 등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장기구득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⁵⁷⁾

제 2 절 시체 해부 관련 현황 및 법제

1. 「개정통일사체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1) 「개정통일사체법」의 체계

「개정통일사체법」은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개정 목적 하에 기존의 「통일사체법」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53) *Id.*, at 45.

54) *Id.*

55) 정의 규정에 추가된 용어는 Adult, Agent, Disinterested Witness, Donor Registry, Driver's License, Eye Bank, Guardian, Know, Minor,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Parent, Prospective Donor, Reasonably Available, Recipient, Record, Sign, Tissue Bank, Transplant Hospital 등이 있다. *Id.*

56) *Id.*

57) *Id.*

<표: 「개정통일사체법」의 체계>⁵⁸⁾

Section	Title	Section	Title
1	약명(略名)	15	구득과 사용의 조정
2	정의	16	신체 일부의 매매 금지
3	적용범위	17	기타 금지 행위
4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	18	면책
5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하는 방법	19	유효성에 적용되는 법; 기증 문서의 집행에 관한 법선택; 유효성의 추정
6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 의사의 변경 또는 철회	20	기증자 명부
7	사체 기증 거부; 거부의 효력	21	사전의료지시서 상의 사체 기증의 효력
8	사체 기증 · 기증 의사 변경 · 철회의 예방적 효과	22	검시관과 구득기관 간의 협력
9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	23	검시관의 관할 하에 있는 망자의 사체 기증의 활성화
10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 기증 의사 변경 또는 철회 방법	24	적용과 해석의 통일성
11	사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사체 기증의 목적	25	전자서명법과의 관계

⁵⁸⁾ 「2006년 개정통일사체제공법(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Section	Title	Section	Title
12	조사 및 통지	26	타법 폐지
13	기증 문서의 전달 불요(不要); 검시 자격	27	시행일
14	구득기관 등의 권한과 의무		

법의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통일사체법」은 주로 기증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타법의 폐지와 시행일 조항을 두되 이들 조항은 제목만 두고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위의 체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개정통일사체법」의 범위가 ‘사체’의 기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살아있는 사람도 신장, 간 등의 장기나 신체부위의 기증이 가능하지만,⁵⁹⁾ 그러한 경우에는 사체의 기증과는 다른 법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⁶⁰⁾

(2) 「개정통일사체법」의 주요 내용

1) 주요 용어의 정의

① 사체 기증

「개정통일사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체 기증(Anatomical gift)”이란 이식, 치료, 연구,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기증자의 사후에 효력을 갖

59)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living donation”이라 한다. Living donation은 망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의지를 표현한 뒤 사후 장기가 사체에서 분리되어 기증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living donation의 경우 기증자가 기증 후에도 생명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증 의지의 확정, 변경, 철회 등이 사체 기증과는 다른 규정을 요한다.

60) 「개정통일사체법」 서문, 3면.

는 사체 또는 그 일부의 기증을 말한다.⁶¹⁾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살아있는 기증자가 살아있는 수혜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는 사체 기증에서 제외된다.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3) “Anatomical gift” means a donation of all or part of a human body to take effect after the donor’s death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therapy, research, or education.

② 망자

“망자(Decedent)”란 죽은 자로서 신체 또는 실체의 일부가 사체 기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⁶²⁾ 이 용어는 사산된 유아(stillborn infant)와 태아(fetus)를 포함한다.⁶³⁾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4) “Decedent” means a deceased individual whose body or part is or may be the source of an anatomical gift. The term includes a stillborn infant and, subject to restrictions imposed by law other than this [act], a fetus.

61) 『개정통일사체법』 § 2 (3).

62) 『개정통일사체법』 § 2 (4).

63) *Id.* 다만, 태아의 경우 이 법 외의 법의 규정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타 법에 의하여 태아는 연구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42 U.S.C. § 289g-1 & 289g-2; 42 CFR § 46.201.

사산아와 태아는 개정 전의 「통일사체법」에서도 포함이 되었던 부분으로, 망자의 범위에 사산아와 태아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정통일사체법」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적 보호가 사산아와 태아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산아와 태아는 다른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정하는 동의(consent) 절차 없이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⁶⁴⁾

태아는 그 정의상 배아(embryo)를 포함하지 않는데, 「개정통일사체법」은 배아나 미분화세포(blastocyte)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체세포의 핵의 이식 등 현대 의료와 과학에서 가능한 연구 및 기술과 관련하여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개정통일사체법」 자체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통일사체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주의 정책과 여전에 따라서는 망자라는 용어의 정의에 유도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분화세포, 배아, 태아는 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할 것을 「개정통일사체법」 해설 부분에서 제안하고 있다.⁶⁵⁾

③ 기증 문서

「개정통일사체법」에서 “기증 문서(Document of gift)”란 기증자카드 또는 기타 사체 기증을 위한 기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에 표시된 문장(statement) 또는 표식(symbol)이 포함된다.⁶⁶⁾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뇌사 판정 시 장기의 이식에 동의함”이라는 문장 옆 빈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이를 기증 문서로 볼 수 있다.

64) 「개정통일사체법」 주석, 14면.

65) *Id.*

66) 「개정통일사체법」 § 2 (6). 운전면허증, 신분증, 기증자명부의 정의는 각각 같은 섹션 (9), (13), (8)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6) “Document of gift” means a donor card or other record used to make an anatomical gift. The term includes a statement or symbol on a driver’s license, identification card, or donor registry.

기존의 「통일사체법」이 기증 문서로 유언장을 명시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통일사체법」은 유언장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는데, 유언장은 시체 기증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으므로, 기증 문서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⁷⁾

④ 기증자

「개정통일사체법」에서 “기증자(Donor)”란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사체 기증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⁶⁸⁾ “기증자명부(Donor Registry)”란 사체 기증, 기증에 대한 변경 사항 및 철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한다.⁶⁹⁾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7) “Donor” means an individual whose body or part is the subject of an anatomical gift.

(8) “Donor registry” means a database that contains records of anatomical gifts and amendments to or revocations of anatomical gifts.

67) 「개정통일사체법」 주석, 15면.

68) 「개정통일사체법」 § 2 (7).

69) 「개정통일사체법」 § 2 (8).

기증자명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장기구득기관과 같은 비정부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⁷⁰⁾

⑤ 안구 은행

『개정통일사체법』에서 “안구 은행(Eye bank)”란 인간의 안구 또는 그 일부의 회수(Recovery), 스크리닝, 시험, 처리, 저장, 분배할 수 있도록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면허, 인가,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10) “Eye bank” means a person that is licensed, accredited, or regulated under federal or state law to engage in the recovery, screening, testing, processing, storage, or distribution of human eyes or portions of human eyes.

⑥ 사체 부위

『개정통일사체법』에서 “사체 부위(Part)”란 장기, 안구, 조직을 포함한다.⁷¹⁾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18) “Part” means an organ, an eye, or tissue of a human being. The term does not include the whole body.

70) 『개정통일사체법』 주석, 15면.

71) 『개정통일사체법』 § 2 (17).

이 정의는 사체 부위를 “장기, 조직, 안구, 뼈, 동맥, 혈액, 체액 또는 기타 인체의 일부”로 규정하던 기존의 정의에 비하여 짧아졌으나, 의학적으로 뼈, 혈액, 정자 등도 조직에 포함되므로 “조직”이라는 용어만을 남긴 것이다. 사체 전체는 사체 부위의 정의에서 배제된다.⁷²⁾

⑦ 의사 및 기사

「개정통일사체법」에서 “의사(Physician)”은 주 법에 따라 의료행위 또는 정골요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⁷³⁾ “기사(Technician)”⁷⁴⁾란 연방 또는 주 법에 따라 면허, 인가, 또는 감독을 받는 적절한 기관이 사체 부위를 적출 또는 처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는 자를 의미하고, 기사에는 안구적출기사(enucleator)⁷⁵⁾가 포함된다.⁷⁶⁾ 즉, 「개정통일사체법」은 장기 이식을 위하여 장기 적출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로 의사와 기사를 두고 있다.⁷⁷⁾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2. DEFINITIONS

(20) “Physician” means an individual authorized to practice medicine or osteopathy under the law of any state.

(29) “Technician” means an individual determined to be qualified to remove or process parts by an appropriate organization that is licensed, accredited, or regulated under federal or state law. The term includes an enucleator.

72) 「개정통일사체법」 주석, 16면.

73) 「개정통일사체법」 § 2 (20).

74) 사체 기증과 관련된 문맥상 기사는 장기적출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5) 몬타나 주는 장기 기증에 관한 법에서 안구 적출에 있어 안구적출기사의 역할과 안구적출기사 인증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자세히는 Montana Statute Annotated § 72-17-311 Eye enucleations - enucleators - qualifications 참조), 이로 미루어보아 “Enucleator”는 안구적출기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76) 「개정통일사체법」 § 2 (29).

77) 「개정통일사체법」 § 14 (j).

2) 주요 규정

①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Section 4)

「개정통일사체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사체 기증의 활성화인 만큼, 「개정통일사체법」은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만이 사체 기증을 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통일사체법」은 자립한 미성년자나 주 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미성년자도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⁷⁸⁾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증자의 대리인(agent), 부모, 후견인 등이 기증자의 생전에 기증자를 대신하여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⁷⁹⁾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4. WHO MAY MAKE ANATOMICAL GIFT BEFORE DONOR'S DEATH.

Subject to Section 8, an anatomical gift of a donor's body or part may be made during the life of the donor for the purpose of transplantation, therapy, research, or education in the manner provided in Section 5 by:

- (1) the donor, if the donor is an adult or if the donor is a minor and is:
 - (A) emancipated; or 18
 - (B) authorized under state law to apply for a driver's license because the donor is at least [insert the youngest age at which an individual may apply for any type of driver's license] years of age;

78) 「개정통일사체법」 § 4 (1)(A)&(B). 다만, § 8에서는 미성년의 기증 의사 또는 기증 거부 의사는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자립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를 표하였을 경우 이는 유효한 기증 의사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성인 기증자의 생전 기증 의사와는 달리 미성년 기증자의 생전 기증 의사는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될 가능성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79) 「개정통일사체법」 § 4 (2)-(4).

- (2) an agent of the donor, unless th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or other record prohibits the agent from making an anatomical gift;
- (3) a parent of the donor, if the donor is an unemancipated minor; or
- (4) the donor's guardian.

② 기증자의 생전에 사체 기증을 하는 방법(Section 5)

사체 기증 집행요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통일사체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개정통일사체법」은 Section 5에서 기증 의사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에 주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기증자명부를 추가 함으로써 사체 기증의 요식을 완화시켰다.⁸⁰⁾

또한, 생전에 공개되지 않은 유언에 사체 기증 의지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유언의 집행 시기 등의 이유로 사체의 기증이 원활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언에 사체 기증 의사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도 사체 기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기증자의 사후에 유언이 무효화 되더라도 사체 기증은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⁸¹⁾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5. MANNER OF MAKING ANATOMICAL GIFT BEFORE DONOR'S DEATH.

- (a) A donor may make an anatomical gift:
 - (1) by authorizing a statement or symbol indicating that the donor has made an anatomical gift to be imprinted on the donor's driver's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 (2) in a will;

80) 「개정통일사체법」 § 5 (a)&(b).

81) 「개정통일사체법」 § 5 (d).

- (3) during a terminal illness or injury of the donor, by any form of communication addressed to at least two adults, at least one of whom is a disinterested witness; or
 - (4) as provided in subsection (b).
- (b) A donor or other person authorized to make an anatomical gift under Section 4 may make a gift by a donor card or other record signed by the donor or other person making the gift or by authorizing that a statement or symbol indicating that the donor has made an anatomical gift be included on a donor registry. If the donor or other person is physically unable to sign a record, the record may be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at the direction of the donor or other person and must:
- (1) be witnessed by at least two adults, at least one of whom is a disinterested witness, who have signed at the request of the donor or the other person; and
 - (2) state that it has been signed and witnessed as provided in paragraph (1).
- (c) Revocation, suspension, expiration, or cancellation of a driver's license or identification card upon which an anatomical gift is indicated does not invalidate the gift.
- (d) An anatomical gift made by will takes effect upon the donor's death whether or not the will is probated. Invalidation of the will after the donor's death does not invalidate the gift.

③ 사체 기증 · 기증 의사 변경 · 철회의 예방적 효과(Section 8)

「개정통일사체법」에서 가장 괄목한 부분은 Section 8의 사체 기증 의사와 기증 의사의 변경 또는 철회의 예방적 효과(preclusive effect)에 관한 부분이다. 「개정통일사체법」의 목적 중의 하나는 사체 기증과 관련하여 기증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전 기증자의 사체 기증 의사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고자는 입법취지가 Section 8에 반영되어 있다.

Section 8은 원칙적으로 “기증자의 분명한 반대 의사가 없는 한, Section 5에 따라 기증자가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하여 기증 의사 를 표한 경우 또는 Section 6에 따라 기증 의지를 변경한 경우에 기증자 외의 사람은 기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한 사체 기증, 기증 의사의 변경, 기증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²⁾ 망자의 생전에 기증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기증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도 망자의 사후에 제3자가 사체 기증, 기증 의사의 변경, 기증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다.⁸³⁾

이러한 규정은 사체 기증 의지에 대한 기증자의 자율적 판단을 주정부 및 유가족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고안된 장치로, 기증자의 사후 타인이 임의로 기증자의 기증 의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개정통일사체법」은 기증자가 생전에 표한 기증 의사를 유가족이 승인, 변경 또는 철회할 권한 및 권리(?)를 배제시킴으로써⁸⁴⁾ 기증자의 기증 의지와 유가족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기증자의 의지가 우선시 되게 되었다.⁸⁵⁾

Section 8은 또한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 의사의 철회가 기증 거부(refusal)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⁸⁶⁾ 즉, 망자의 생전에 망자 또는 Section 6에 따라 망자 이 외의 사람이 사체 기증 의지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Section 4 또는 9에 따라 망자의 사후에 망자의 사체를 기증할 법적 권한이 있는 자가 망자의 사체를 기증할 수 있다.

82) 「개정통일사체법」 § 8 (a). 다만, 같은 Section의 (g)와 (f)가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83) 「개정통일사체법」 § 8 (c).

84) 「개정통일사체법」 주석, 30면.

85) 이 규정은 망자의 시신에 대한 유가족의 재산권(Property right)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장기 기증을 위한 의학적 절차 이후 망자의 시신 처리 방법에 대한 결정권 등 주 법에서 허용하는 다른 재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Id.*

86) 「개정통일사체법」 § 8 (b) & (d).

다만, Section 8은 미성년자에 한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생전 기증 의지 또는 기증 거부 의지가 부모에 의하여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⁸⁷⁾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8. PRECLUSIVE EFFECT OF ANATOMICAL GIFT, AMENDMENT, OR REVOCATION.

-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g) and subject to subsection (f),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contrary indication by the donor, a person other than the donor is barred from making, amending, or revoking an anatomical gift of a donor's body or part if the donor made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5 or an amendment to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6.
- (b) A donor's revocation of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6 is not a refusal and does not bar another person specified in Section 4 or 9 from making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5 or 10.
- (c) If a person other than the donor makes an unrevoked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5 or an amendment to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6, another person may not make, amend, or revoke the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10.
- (d) A revocation of an anatomical gift of a donor's body or part under Section 6 by a person other than the donor does not bar another person from making an anatomical gift of the body or part under Section 5 or 10.
- (e)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contrary indication by the donor or other person authorized to make an anatomical gift under Section 4, an anatomical gift of a part is neither a refusal to give another part nor a

87) 『개정통일사체법』 § 8 (g) & (h).

limitation on the making of an anatomical gift of another part at a later time by the donor or another person.

(f)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contrary indication by the donor or other person authorized to make an anatomical gift under Section 4, an anatomical gift of a part for one or more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Section 4 is not a limitation on the making of an anatomical gift of the part for any of the other purposes by the donor or any other person under Section 5 or 10.

(g) If a donor who is an unemancipated minor dies, a parent of the donor who is reasonably available may revoke or amend an anatomical gift of the donor's body or part.

(h) If an unemancipated minor who signed a refusal dies, a parent of the minor who is reasonably available may revoke the minor's refusal.

④ 망자(亡者)의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는 자(Section 9)

『개정통일사체법』은 기증자의 생전과 사후 모두의 경우에 대하여 사체 기증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전에는 기증자 자신을 포함하여 기증자의 대리인, 부모, 후견인 등이 경우에 따라 사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Section 9에서는 사체 기증 또는 기증 거부를 하지 않은 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를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자를 나열하고 있다.⁸⁸⁾ 총 10개 종류의 사람이 기증 의사를 표함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망자의 사망 시 망자의 대리인(agent)로, 망자의 사망 직전 Section 4(2)에 따라 사체 기부를 할 수 있었던 자, (2) 망자의 배우자, (3) 망자의 성인 자녀, (4) 망자의 부모, (5) 망자의 성인 형제, (6) 망자의 성인 조손, (7) 망자의 조부모, (8) 망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한 성인, (9) 망자의 사망 시

88) 『개정통일사체법』 § 9 (a).

망자의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 (10) 망자의 유해 처리(dispose) 권한을 가진 자의 순이다.⁸⁹⁾

이 리스트는 종래의 「통일사체법」에서 확장된 것으로, 종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망자의 대리인, 성인 조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지인 등이 망자의 사체 또는 사체 일부를 기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개정통일사체법」

SECTION 9. WHO MAY MAKE ANATOMICAL GIFT OF DECEDENT'S BODY OR PART.

(a) Subject to subsections (b) and (c) and unless barred by Section 7 or 8, an anatomical gift of a decedent's body or part for purpose of transplantation, therapy, research, or education may be made by any member of the following classes of persons who is reasonably available, in the order of priority listed:

- (1) an agent of the decedent at the time of death who could have made an anatomical gift under Section 4(2) immediately before the decedent's death;
- (2) the spouse of the decedent;
- (3) adult children of the decedent;
- (4) parents of the decedent;
- (5) adult siblings of the decedent;
- (6) adult grandchildren of the decedent;
- (7) grandparents of the decedent;
- (8) an adult who exhibited special care and concern for the decedent;
- (9) the persons who were acting as the [guardians] of the person of the decedent at the time of death; and
- (10) any other person having the authority to dispose of the decedent's body.

89) *Id.*

- (b) If there is more than one member of a class listed in subsection (a)(1), (3), (4), (5), (6), (7), or (9) entitled to make an anatomical gift, an anatomical gift may be made by a member of the class unless that member or a person to which the gift may pass under Section 11 knows of an objection by another member of the class. If an objection is known, the gift may be made only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lass who are reasonably available.
- (c) A person may not make an anatomical gift if, at the time of the decedent's death, a person in a prior class under subsection (a) is reasonably available to make or to object to the making of an anatomical gift.

2. 무연고 시체 해부 관련 주별(州別) 법제

(1) 개요 및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실태

무연고 시체(Unclaimed Dead Bodies)란 단순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의 시체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의사의 감독 아래에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가족과 친지에 의하여 인수가 거부된 시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⁹⁰⁾ 주에 따라서는 교도소와 같은 주정부기관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체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⁹¹⁾

90) Daniel H. Coelho & Arthur L. Caplan, *The Unclaimed Cadaver*, Academic Medicine Vol. 72 No. 9 (Sept. 1997) at 741.

91)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주립 교도소에서 발생한 무연고시체의 인수 및 의료기관으로의 양도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히는 See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ublic Institutions - Dead Bodies - Disposition of Unclaimed Bodies of Deceased Inmates at State Institutions - Responsibility for Forst of Burial", AGO 1953 Mo. 85 (Jul. 10, 1953), available at <http://www.atg.wa.gov/ago-opinions/public-institutions-dead-bodies-disposition-unclaimed-bodies-deceased-inmates-state> (last visited 2015. 6. 15).

각 주가 정한 소기의 시간 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체는 공식적으로 무연고 시체로 간주되고 각 주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이 시체의 처리와 관리는 여전히 주법에 의해 규정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노숙자나 행렬자의 시체는 실제 해부학 연구를 위하여 잘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시체가 발견되어 검시관에게 이송되고 검시가 완료되면 시체가 부패하여 적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며, 검시 과정에서 연구나 교육에 핵심적인 장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⁹²⁾

(2) 각 주의 무연고 시체처리 현황

주마다 무연고 시체의 정의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연고 시체라 선언되기 까지 필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각 시설로 운송 이후에도 사용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몇 달까지 시체의 사용이 보류된다. 즉, 무연고 시체라 간주된 시체가 바로 옆 주에서 무연고 시체성을 부정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 주는 무연고 시체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적 요소

사망이 발생한 장소와 의학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운송비용 및 시체상태의 적합성이 영향을 받는다. 주의 물리적 면적과 운송 비용은 비례하며 비용을 지불할 시체관련 기관의 의욕은 반비례한다. 또 주의 지형이 험하면 운송비용이 올라간다. 높은 비용은 무연고 시체의 사용을 거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⁹³⁾

92) Daniel H. Coelho & Arthur L. Caplan, *Supra*, at 741.

93) *Id.*, at 742.

2) 인구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숫자도 많고 무연고 시체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따라서 의료 및 의학교육 기관들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와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체의 수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인구는 많은데 의학기관이 적은 주는 무연고 시체의 사용을 지양하며 인구는 적지만 많은 의학시설을 유치한 경우 무연고 시체의 사용을 지향한다.⁹⁴⁾

3) 사회경제적 요소

주가 경제적으로 부유할수록 무연고 시체의 발생률이 낮은 반면,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주거하는 곳일수록 무연고 시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⁹⁵⁾ 망자의 친족이 망자의 사망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장례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에서 시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노숙자 또는 행렬환자의 발생 확률도 높다.

(3) 주요 규정

1) 무연고 시체의 신원확인 및 검시

각 주법에 따라 검시관은 신원이 불분명한 시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설명되지 않은 죽음 및 범죄에 의한 것으로 죽음으로 의심되는 시체를 부검한다. 검시 및 시체의 신분 확인 절차에 관해서는 주로 해당 주의 시체의 처리법 혹은 사망증명서법 등에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대부분 망자의 소지품 및 재산, 전

94) *Id.*, at 742.

95) *Id.*, 무연고 시체가 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무연고 시체의 교육연구용 해부는 그러한 계층에 대한 또 다른 착취행위로 보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과의 열람, 치과기록의 열람,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검색, DNA 검사 등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⁹⁶⁾

주 법이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검시관협회 등이 발행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보다 하위 수준의 법령인 카운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연고자에 대한 조사 외에도 망자가 생전에 작성한 사전지시서(advance directives)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기도 한다.⁹⁷⁾

2) 무연고 시체의 처리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무연고 시체를 의료기관 또는 의학교육기관이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⁹⁸⁾

오하이오 주의 경우 공립 또는 공공 기금 지원을 받는 병원, 요양원, 자선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시체(인수자가 없는 시체)로 주 정부 또는 하위 지방 정부의 비용으로 매장하여야 하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은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먼저 해부학 교육 인가를 받은 기관의 해부학 교수 또는 방부처리(embalming)위원회의 서기와 장례위원회에게 그러한 시체의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36 시간 이내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신청을 통하여 의학, 외과 교육, 해부, 또는 방부처리 교육(study of embalming)을 위하여 해부학 교수나 방부처리위원회가 사체를 인수할 수 있다. 다만,

96) Linda Tashbook, “Under the law, what happens if a homeless person is found dead and nobody knows who it is?”(May 12, 2008), <https://homelesslaw.wordpress.com/2008/05/12/under-the-law-what-happens-if-a-homeless-person-is-found-dead-and-nobody-knows-who-it-is/> (last visited 2015. 6. 15). 구체적인 사례로 DNA 검사를 하는 펜실베니아주, 지문 등을 채취하는 워싱턴 주, 시체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요구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97) 예를 들어, 웨스트버지니아주(Social Services Manual Ch. 17 Sec. 4.4).

98) 예를 들어, 오하이오(Ohio Revised Code § 1713.34), 알칸소(Arkansas Code § 20-17-7), 델라웨어(Delaware Code § 16-27-02).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인 경우는 제외된다. 사체의 인수 비용은 사체를 인수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은 주로 의과대학과 관련한 기관에 관한 규정 또는 공공위생과 보건에 관한 규정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하이오 주의 입법례는 매우 일반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14 Ohio Revised Code』

§ 1713.34 - Medical colleges or embalming board may receive bodies for study or dissection - procedure.

Superintendents of city hospitals, directors or superintendents of city infirmaries, county homes, or other charitable institutions, directors or superintendents of workhouses, founded and supported in whole or in part at public expense, superintendents or managing officers of state benevolent institutions, boards of township trustees, sheriffs, or coroners, in possession of bodies not claimed or identified, or which must be buried at the expense of the state, county, or township, before burial, shall notify the professor of anatomy in a college which by its charter is empowered to teach anatomy, or the secretary of the board of embalmers and funeral directors of this state, of the fact that such bodies are being so held. If after a period of thirty-six hours the body has not been accepted by friends or relatives for burial at their expense, such superintendent, director, or other officer, on the written application of such professor, or the secretary of the board of embalmers and funeral directors, shall deliver to such professor or secretary, for the purpose of medical or surgical study or dissection or for the study of embalming, the body of any such person who died in any of such institutions from any disease which is not infectious. The expense of the delivery of the body shall be borne by the parties in whose keeping the body was placed.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정부 소속 또는 의료 및 의학교육기관협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무연고 시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⁹⁹⁾ 이들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이 의학교육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느 교육기관에 어느 순서로 시체를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WEST VIRGINIA CODE』

§ 18B-4-8. West Virginia anatomical board; powers and duties relating to anatomical gifts; requisition of bodies; autopsies; transportation of bodies; expenses of preservation; bond required; offenses and penalties.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the "West Virginia anatomical board" which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members: (1) The dean of the school of dentistry, West Virginia university; (2) the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anatomy, West Virginia university; (3) the chairperson of the 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Marshall university; and (4) the dean of the school of medicine, West Virginia school of osteopathic medicine.

(b) [생략]

(c) The board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requisition for, receiving and making disposition of the dead human bodies for the scientific uses and purposes of reputable education institutions, within the state and elsewhere, having medical, osteopathy, dentistry or nursing schools. The board shall have full power to establish rules for its own government and for the requisition, use, disposition and control of such bodies as may come under its authority by way of gift, pursuant to this section or pursuant to section four, article nineteen, chapter sixteen of this code.

99) 텍사스(Texas Health & Safety Code § 691.023), 콜로라도(Colorado Revised Statutes § 12-34-201), 플로리다(Florida Statutes Chapter 406 Part 50),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Code § 18B-4-8).

- (d) All dead human bodies which may come under the charge or control of any mortician, any officer or agent of the department of welfare or of any county commission or municipality, or any superintendent, officer or agent having the supervision of any prison, morgue, hospital or other public institution in this state and which may be required to be buried at public expense, shall be subject to the requisition of the board as provided in this section. No such body shall be delivered to the board if any person related to the deceased by blood or marriage shall make a statement in writing to that effect and shall claim such body for burial or shall make affidavit that the relative is unable to bear the expense of burial and desires that the deceased be buried at public expense. This statement and affidavit may be filed by any such relative with the person having charge and control of the body of the person so claimed, either before or after the death of such person.
- (e) No autopsy shall be performed on any unclaimed body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board, except upon the proper order of a duly authorized law-enforcement officer.
- (f) It shall be the duty of any person who has charge or control of any unclaimed body, subject to requisition by the board, to give notice to the board of that fact by telephone or telegraph within twenty-four hours after such body comes under that person's control. Thereafter, such person shall hold the body subject to the order of the board for at least twenty-four hours after the sending of such notice. If the board makes requisition for the body within the twenty-four hour period, it shall be delivered, pursuant to the order of the board, to the board or its authorized agent for transportation to any education institution which the board considers to be in bona fide need of the body and able to adequately control, use and dispose of the body. The board shall make suitable arrangements for the transportation of any body, or part or parts of any body, which may come under its authority to the education institution. All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eservation, delivery and transportation of any body

delivered pursuant to the order of the board shall be paid by the education institution receiving the body.

(g), (h) [생략]

위와 같이 무연고 시체의 발생 시 교육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의료 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시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의 예산으로 무연고 시체를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 3 절 시사점

1. 「개정통일사체법」이 주는 시사점

「개정통일사체법」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도입한 사체 기증에 관한 법률로, 개인의 사체 기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이 그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체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이 가능한 자의 범위와 기증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소수 유족의 반대로 인하여 다수 유족의 기증 의사가 좌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부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부 미성년의 사체 기증이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증된 사체의 효율적인 회수, 관리, 분배를 위한 행정적인 체계를 명문화하여 기증자명부가 없는 주에도 기증자명부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개정통일사체법」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시체 해부 및 장기 이식 관련 법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해부되는 시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보존법’)」은 1964년에 제정된 뒤 현재까지 그 틀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 년 간에 걸쳐 「시체해부보존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시체의 해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 및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는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그러한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 학생이 시체를 할 수 있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좁다. 「개정통일사체법」의 경우 의사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주 법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자와 장기 또는 안구의 적출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적출기사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사체로부터의 장기 적출의 경우 사체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이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자도 숙련된 기술과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체해부보존법」상으로는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 유가족의 서면 승낙이 필요하다.¹⁰⁰⁾ 그러나 기증자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 적용되는 장기 뿐 아니라 사체 전체를 기증하고자 할 때 본인의 기증 의사가 「민법」상의 요식에 따른 유언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대학병원 등에서 유가족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사체가 기증된 경우에도 시체 해부를 회피하고 있다.¹⁰¹⁾ 「시체해부보존법」과 유사하게 「장기이식법」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본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였을 경우 장기등의 적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적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¹⁰²⁾ 즉, 기증자의 기증 의지보다 유가족의 거부 의지가 우선 존중되고 있는 것이다.

100) 「시체해부보존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101) 김원식, 위의 논문, 44면.

102) 「장기이식법」 제22조제3조제1호.

문화적으로 망인의 유해에 대한 유가족의 집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식, 치료,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충분한 수의 사체와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고자 한다면 「개정통일사체법」에서와 같이 사체 및 장기의 기증에 있어 기증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실효성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체 기증 의사를 유언을 통하여 표할 경우, 유언의 집행 시기 등에 따라 사체와 장기가 적절한 때에 적출 또는 해부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는 ULC의 판단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며, 유언 외의 간소화된 서식으로도 유효한 기증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요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이식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장기등기증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장기 기증 의사를 철회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다.¹⁰³⁾ 「개정통일사체법」에서는 장기 기증을 한 자가 기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기증자명부에 그 기증 의사 표시와 철회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도록 하고, 기증자의 사후에도 법적 지위를 갖춘 자가 기증자의 사체를 기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기증자의 기증 의사 철회(revocation)는 기증 거부(refusal)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이식법」에서 “철회”라는 용어는 기증 의사를 표한자가 후에 마음을 바꾸어 기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사용되고, “거부”라는 용어는 유가족이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기증자의 자율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개정통일사체법」에서와 같이 철회와 거부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고, 기증자의 생전 철회와 사후 기증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는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와 사체 또는 장기기증의사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03) 「장기이식법」 제14조제5호.

2. 무연고 시체 처리 관련 법제가 주는 시사점

미국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에 있어 무연고 시체의 활용에는 우리나라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무연고 시체의 활용 범위가 해부 뿐 아니라 방부처리를 위한 교육과 실습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시체 방부 처리 기술은 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시체 방부처리 기술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했을 경우 필요 한 기술일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교육에 활용이 가능한 해부모형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체(cadaver)를 이용한 해부학 교육 및 실습에 대한 윤리적 및 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사체를 조달할 필요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시체 방부처리 기술의 교육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비단 무연고 시체 뿐 아니라 기증된 시체에 대해서도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와 의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해부 뿐 아니라 방부처리(embalming)과 같이 시체의 보존에 관련된 교육 및 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시체 해부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무연고 시체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무연고 시체의 분배는 의료교육기관의 장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하다. 의료교육기관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경우 신속한 인수 절차와 공평한 안배를 위하여 사전에 관련자들이 모여 절차와 순서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무연고 시체의 해부와 관련 한 실효성과 윤리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⁰⁴⁾

104) See, D. Gareth Jones & Maja I. Whitaker, *Anatomy's Use of Unclaimed Bodies: Reasons*

무연고 시체의 교육 및 연구 목적 활용에 반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는 사전에 기증 의사를 표하지 않은 망자의 시체를 망자 본인이나 유가족의 허락 없이 해부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무연고 시체는 대다수의 경우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발생하게 마련이며,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후의 대우에까지 차별 또는 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어차피 정부의 예산으로 장례 및 매·화장 비용을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논리가 무연고 시체의 해부에 타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¹⁰⁵⁾

둘째는 사망 사실 통보 및 검시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에는 시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후일 경우가 많으며, 주의 지리적 요건에 따라 무연고 시체의 발생 위치와 시체의 수요처인 의료 및 의학교육 기관 간의 거리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제한으로 인하여 무연고 시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gainst Continued Dependence on an Ethically Dubious Practice, Clinical Anatomy 25: 246 - 254 (2012).

105) For example, *Id.*, and Daniel H. Coelho & Arthur L. Caplan, *supra*.

제 5 장 요약 및 결론

현행 「시체해부법」은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목적 조항 외 시체 해부 자격, 시체 해부 명령, 변사체의 검증, 연구를 위한 해부, 시체의 관리, 이상 발견 시의 조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시체의 인도, 시체의 화장, 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시체 표본 승낙, 시체에 대한 예의, 권한의 위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시체해부의 자격, 무연고 시체의 해부, 시체해부 시 유족의 승낙 등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시체해부법」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진 일본의 「사체해부보존법」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보다 폭넓고 유연한 시체해부 자격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특히,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도 시체의 해부가 가능하며, 지정 기준은 수 년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연고 시체의 해부와 관련하여 무연고 시체에 대한 수요의 감소와 인권침해 등이 문제시되어 무연고 시체의 해부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기증된 시체로만 교육 및 연구용 해부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반면, 일본은 무연고 시체에 대한 조항의 개정 논의는 아직 없으며, 이는 비록 시체 기증자의 수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많더라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기증되지 않고 편중되기 때문에 여전히 해부실습용 시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체 해부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점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보급으로 인하여 해부실습용 시체의 사

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망자의 존엄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학회들은 자체적으로 대학에 권고문을 보내어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안은 시체에 대한 예우 관련 조항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개정통일사체법」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도입한 시체 기증에 관한 법률로, 개인의 시체 기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이 그러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개정 전의 「통일사체법」에 비하여 기증이 가능한 자의 범위와 기증 방법을 확대하고 소수 유족의 반대로 인하여 다수 유족의 기증 의사가 좌절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시체 기증 방법을 확대하고 과정을 원활화 하고 있다. 또한, 기증된 시체의 효율적인 회수, 관리, 분배를 위한 행정적인 체계를 명문화하여 기증자명부가 없는 주에도 기증자명부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통일사체법」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망자의 생전 기부 의지의 강력한 존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족의 승낙(또는 최근 개정안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는 생전 기부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의 활발한 기증과 수급을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과 정서상 유족 중 소수가 반대할 경우에도 망자의 기증 의사가 좌절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소수 유족의 반대로 다수 유족의 기증 찬성 의지가 무시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체 기증자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시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 균등하게 시체가 기증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증자명부와 같은 행정적인 체계를 법으로 마련하여, 기증된 시체의 효율적인 회수, 관리,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

<표: 시체해부 관련 생점별 한국, 일본, 미국의 관련법상 규정>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해부 자격	<p>시체해부에 관해 상당한 학식기능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그 외의 자로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또는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 ①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실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2년 이상 해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최근 5년 내에 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와 15구 이상에 대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p>면허 소지자 중 연 10구 이상 부검 사례가 있는 의료, 연구, 감찰의무기관 등에서 연구 또 는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 최근 5년 이내에 5구 이 상에 대한 해부보조와 15구 이 상에 대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조교수 직에 서 해부 관련 연구 및 교육업 종으로 이직한 사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 람 중 ①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의 전임강사 직에 있으 며 5년 이상 해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최근 5년 이내에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p>25구 이상에 대한 해부보조와 25구 이상에 대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 ②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 또는 조교수 직에서 해부 관련 연구 및 교육업종으로 이직한 사람, ③ ①에 제시된 사람과 동등한 지식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며 해부 관련 연구 및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p>	
의과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수 또는 준교수 등	의학대학의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교수 또는 준교수	복지부·국방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시체 해부를 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국민 복건에	지역 내 전염병, 중독,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및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사체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위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검역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	검역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	경찰 등이 취급하는 시체의 사인 규명 또는 신원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	불필요 - 기증자의 의증 의사가 법적 요건에 따라 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증자 외의 사람은 기증자의 신체 또는 신체 일부에
유족의 승낙/동의 필요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 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2명 이상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사망을 확인한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	대한 사체 기증, 기증 의사의 변경, 기증 의사의 철회를 할 수 없다.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p>「시체해부부법」</p> <p>「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p> <p>「가정통일사체기증법」</p>	<p>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p> <p>「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 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p>	<p>지역 내 전염병, 중독,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및 사인의 명백하지 않은 사체</p> <p>형사소송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p> <p>경찰 등이 취급하는 사체의 사인 규명 또는 신원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p> <p>식품위생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p> <p>「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p> <p>검역법에 의해 해부하는 경우</p>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무연고시체의 해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체 없이 그 시체의 부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는 소재지 시정 출장이 의학에 관한 대학의 장으로부터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교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시체 확인 후 교부할 수 있다.	각 주 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인수한 후 관련 위원회 등을 거쳐 의과대학 등에 교부된다.
무연고시체의 인수 전 조치	시체의 부폐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자 취급법에서 규정하는 시정총은 자체없이 동법 소정의 수속(사행령 추가)	각 주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체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조치(지문, DNA 조회 등)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무연고시체의 인도	사망 확인 후 30일 이내에 인수 자로부터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시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한 뒤에라도 사자의 상속인 및 그 외 사자와의 상당한 관계가 있는 인수인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체가 특히 일기 어려운 경우로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보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않다.	주 법에 따른다.	-
시체의 표본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자는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 해부한 사체의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

국 가	한 국	일 본	미 국
관련법	「시체해부법」	「시체해부보존법」 및 「현체법」	「가정통일사체기증법」
	표본으로 보존할 수 있다. 유족의 서면 승낙 필요하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외된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표본을 위해선 유족의 승낙과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의 소체가 불분명할 때에는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예 우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해야 한다.	사체를 해부하거나 그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존하는 자는 사체의 취급에 있어서 특허 예의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참고자료>

<논문, 보고서, 단행본 자료>

김원식, “인체해부실습과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한계”,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4권 제1호(2011).

박창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030집 제4호(2013).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매뉴얼 (2012. 8).

이주주, “시신기증 영향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카톨릭 대학교 행정학석사 학위논문(2011).

정봉실, “우리나라의 인체기증 활성화방안 : 장기, 각막, 인체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 석사학위논문(2009).

최수환 등, “해부용 시신의 인구학적 특성-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시신기증자 110명을 대상으로-”,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2권 제3호(2009).

황선종 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등록한 시신기증인들의 사회적 특성”,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제25권 제2호(2012).

<법령, 정책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96, 문정림의원 등 10인, 2014년 8월 1일).

참 고 문 헌

의안정보시스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367, 이학영 의원 등 11인, 2013년 6월 7일).

의안정보시스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5388, 정부 발의, 2015년 6월 1일).

의안정보시스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인터넷 자료>

대한의사협회의학용어위원회, <http://term.kma.org/main.aspx>.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이왕재, “해부학이야기”, 비타민C 박사 이왕재 교수의 웹사이트, <http://www.doctorvitamin-c.co.kr/anatomy.shtml>.

한겨레신문, “시신기증 신청 그만 받겠습니다”(2006. 9. 11), available at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156098.html>

한국의학교육평가원, <http://www.kimee.or.kr/new2009/main.html>.

MBC 뉴스데스크, “해부학 교육용 시신 부족”(1993. 10. 7), available at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60463_13445.html

<해외 참고자료>

<논문, 보고서, 단행본 자료>

Daniel H. Coelho & Arthur L. Caplan, *The Unclaimed Cadaver*, Academic Medicine Vol. 72 No. 9 (Sept. 1997).

D. Gareth Jones & Maja I. Whitaker, *Anatomy's Use of Unclaimed Bodies: Reasons Against Continued Dependence on an Ethically Dubious Practice*, Clinical Anatomy 25:246 - 254 (2012).

Linda Tashbook, "Under the law, what happens if a homeless person is found dead and nobody knows who it is?" (May 12, 2008), <https://homelesslaw.wordpress.com/2008/05/12/under-the-law-what-happens-if-a-homeless-person-is-found-dead-and-nobody-knows-who-it-is/>.

Joseph L. Verheijde, et al., *The United States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New challenges to balancing patient rights and physician responsibilities*, Philos Ethics Humanit Med. 2007;2:19 (2007).

Sheldon Kurtz, *The 2006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 A Law to Save Lives*, Health Law Analysis (Feb. 2007).

Washington Stat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Public Institutions - Dead Bodies - Disposition of Unclaimed Bodies of Deceased Inmates at State Institutions - Responsibility for Forst of Burial", AGO 1953 Mo. 85 (Jul. 10, 1953).

河田 光博, et al., "人体および人体標本を用いた医学・歯学の教育と研究における倫理的問題に関する提言" (2013. 8. 1), available at http://www.jslm.jp/topics/teigen_201308.pdf.

星野一正, "献体の法制化を顧みて", 時の法令1486号 55-61, (1994. 11. 30) 民主化の法理医療の場合, <http://cellbank.nibio.go.jp/legacy/information/ethics/refhoshino/hoshino0017.htm>.

伏見康治, “献体登録に関する法制化の促進について(勧告)” (総字第1660号)
(1979. 11. 24), available at <http://www.scj.go.jp/ja/info/kohyo/09/11-16-k.pdf>.

<법령, 정책 자료>

Uniform Law Commission, 「Uniform Anatomical Gift Act」.

Uniform Law Commission, 「Revised Uniform Anatomical Gift Act 2006」.

Justicia, Arkansas Code § 20-17-7.

Justicia, Colorado Revised Statutes § 12-34-201.

Justicia, Delaware Code § 16-27-02.

Justicia, Florida Statutes Chapter 406 Part 50.

Justicia, Montana Statute Annotated § 72- 17-311.

Justicia, Ohio Revised Code § 1713.34.

Justicia, Texas Health & Safety Code § 691.023.

Justicia, West Virginia Code § 18B-4-8.

State of West Virginia, Social Services Manual Ch. 17 Sec. 4.4.

総務省行政管理局, e-Gov, 「死体解剖保存法」(昭和二十四年六月十日法律第二百四号).

総務省行政管理局, e-Gov, 「医学及び歯学の教育のための献体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八年五月二十五日法律第五十六号).

総務省行政管理局, e-Gov, 「死体解剖資格認定要領」(平成15年12月16日),
<http://shinsei.e-gov.go.jp/search/servlet/Procedure?CLASSNAME=GTAMSTDETAIL&id=4950000002860&fromGTAMSTLIST=true&SYORIMODE=>.

<인터넷 자료>

Justicia, US Law, available at <http://law.justia.com/>.

Uniform Law Commission, available at <http://uniformlaws.org>.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rgan Donor, available at <http://organdonor.gov>.

総務省行政管理局, e-Gov, <http://law.e-gov.go.jp>.